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부가통신사업자 중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대상 제외 >
■ 황정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840호)

2026.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부가통신사업자 중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대상 제외	2
[참고] 현행법 제35조제1항의 주요통신사업자 목록('26년 기준)	9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황정아의원 등 11인

나. 발의연월일 : 2026. 1. 5.

다. 회부연월일 : 2026. 1.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수립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중에서 이용자 수 또는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도 포함됨.

그런데 트래픽 양을 기준으로 주요방송통신사업자를 지정할 경우 재난 상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부가통신사업자까지 의무대상에 포함되어 불필요한 규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칙적으로는 트래픽 양 등을 기준으로 주요방송통신사업자를 지정하되,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여 규제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단서, 제35조의2제1항제1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부가통신사업자 중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대상 제외

가. 주요 내용

- 대규모 부가통신사업자 중 국민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시행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35조제1항 단서 및 제35조의2제1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송통신사업자(이하 “주요방송통신사업자”라 한다)의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 및 그 밖에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하 “방송통신재난”이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방송통신재난을 신속히 수습·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35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 ----- ----- ----- ----- ----- ----- ----- ----- ----- ----- ----- ----- ----- ----- -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 <u>중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국</u>

현행	개정안
1. ~ 5. (생략) ② (생략) 제35조의2(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① 통신재난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략) <신설> 2. ~ 6. (생략) ② (생략)	<u>민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제35조의2에 따른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u>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의2(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① ----- -----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주요방송통신사업자 제외에 관한 사항</u> 2.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나. 검토 의견

- 현행법 제35조제1항¹⁾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하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송통신사업자(이하 “주요방송통신사업자”라 한다)의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 및 그 밖에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하 “방송통신재난”이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방송통신재난을 신속히 수습·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여 방송통신재난 발생을 예방하고, 방송통신재난을 신속히 수습·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범위**는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통신사업자²⁾, ②지상파방송사업자(지역방송사업자 제외), ③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PP,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³⁾, 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⁴⁾로 규정되어 있음([참고] 주요통신사업자 목록('26년 기준)).
-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내용에는 ①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방송통신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방송통신설비와 그 설치 지역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②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신속한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 ③방송통신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그 밖에 방송통신재난의 관리에 필요

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주요방송통신사업자)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가입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
2. 회선 수가 50만 이상인 자

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주요방송통신사업자) ②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천만명 이상인 자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하루 평균 국내 트래픽 발생량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인터넷 서비스(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포함한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하루 평균 소통되는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100분의 2 이상인 자

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주요방송통신사업자) ③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운영·관리하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전산실 바닥면적이 2만 2,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전(受電)설비의 용량이 40메가와트 이상일 것
2.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소관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하여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현황, 원인, 응급조치 내용 및 복구대책 등을 지체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⁵⁾(제38조),

방송통신재난의 피해복구 진행 상황 등을 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에 보고(제39조제4항)하여야 하는 등 각종 의무를 부여받음.

- 현행법 제40조의4에 따르면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음.

- 개정안은 이러한 방송통신재난 관련 의무가 부과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인 대규모 부가통신사업자 중 국민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 현행법에 따를 경우 국내 이용자 수와 트래픽 발생량만을 기준으로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방송통신재난 관련 의무가 부과되는데, 방송통신재난과 무관한 사업자까지 불필요한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를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외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5)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편·보도PP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도 보고하여야 함.

- 다만, 개정안에 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개정안은 대규모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시행의무를 부과하고자 했던 당초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종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기간통신사업자,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만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2022년 10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카카오·네이버 등 서비스 장애 사고에 따라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부가통신사업자도 의무를 이행하도록 개정된 바 있음.⁶⁾
- 대규모 방송통신재난으로부터의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적용 대상을 확대시켰던 당초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가통신사업자를 방송통신재난 예방에 필요한 설비 관리, 방송통신재난 발생 시 과기정통부로의 보고 의무 등으로부터 제외함으로써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적용대상을 축소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국민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기준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둔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심의를 통해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적용대상 중 국민안

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법률 제19152호로 개정된 것), 2023.1.3. 공포 및 2023.7.4. 시행

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규모 부가통신사업자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보임.

- 통신재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지침, 중요통신 시설 등급지정 기준 등의 심의·의결기구인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⁷⁾으로 구성하며, ‘21년 구성 이후 매년 3~5회 개최⁸⁾되고 있음.

○ 비록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기준이 불분명함에 따라 규제 혼란이 예상되는 측면이 있음.

- 현행법에 따라 대규모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의무가 부과되고 있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1~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⁹⁾에서, 이러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대상을 정

7) 관계 부처 국장급 공무원 5인, 민간 전문가 10인(통신 관련 7인, 재난 관련 2인, 법률가 1인)의 총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는 (‘21년) 3회, (‘22년) 4회, (‘23년) 4회, (‘24년) 5회, (‘25년) 3회 개최되었음.

9)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35조의3제3항의 기준에 따라 통신시설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3항에 따른 보완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3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운용하지 아니한 자
6.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5. 제36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6. 제38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하기 위하여는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임.

- 또한, 현행법을 적용받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여러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는 점에서 ‘서비스’를 기준으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부가통신사업자를 선별하는 것의 타당성과 현실적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① 개정안 중 국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판단기준이 불명확하며,
② 현재 통신재난관리 의무 대상 부가통신사업자의 주요 서비스는 포털, SNS, 쇼핑, OTT 등으로 해석에 따라 일부 부가통신사업자가 규제 제외대상이 될 경우 규제 공백이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는 입장임.
- 종합해보면,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규모 부가통신사업자를 방송통신재난 예방 의무 부과 대상으로 추가하였던 당초 입법 취지, 개정안에 따른 제외 대상에 대한 기준의 불명확성, 관계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신중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226

7. 제39조제4항에 따른 피해복구 진행 상황 등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7의2.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8.·9. (생 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참고

현행법 제35조제1항의 주요통신사업자 목록 (‘26년 기준)

각 호에 따른 분류	목록		
기간통신사업자	SKT, KT, LGU+, SK브로드밴드, 세종네트웍스, LG헬로비전, 딜라이브, 삼성SDS, 한국케이블텔레콤, CMB, KT HCN		
지상파텔레비전 방송사업자 (지역방송사업자 제외)	KBS, MBC본사, EBS, SBS 등		
종편PP, 보도전문PP	채널A, JTBC, MBN, TV조선, YTN, 연합뉴스TV		
부가통신사업자	연번	사업자명	주요 서비스
	1	Google LLC	구글 검색, 유튜브, 지메일, Chrome Sync, 구글 플레이
	2	네이버	네이버 메인, 네이버 검색, 네이버페이, 쇼핑, 지도
	3	넷플릭스	넷플릭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4	Meta Platform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5	삼성전자	삼성페이, SmartThings, 삼성어카운트, 삼성헬스
	6	SK텔레콤	에이닷 전화, T ID, T 월드, T 멤버십, PASS
	7	AWS	AWS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8	지에스네오텍	CDN(Content Delivery Network)
	9	카카오	카카오톡, 카카오맵
	10	쿠팡	쿠팡,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KT클라우드, LGU+, SK브로드밴드, 삼성SDS, LG CNS, MS5673코리아,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2.)